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536

발의연월일: 2025. 2. 27.

발 의 자: 강득구·강준현·김교흥

김성환 · 김영환 · 김 윤

김준혁 · 윤종오 · 이용우

이학영 · 정성호 · 채현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중 인명 수색을 위해 개방한 현관문의 수리비를 배상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음.

소방공무원이 화재, 재난·재해 등의 현장에서 인명구조·구급 등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지만, 손실보상에서는 자유롭지 못해소방공무원의 소극적인 소방 활동을 초래할 수 있음.

이에 소방공무원의 소방 활동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손실보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(안 제49조의2).

법률 제 호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 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) 손실보상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의2(손실보상) ① 소방청장	제49조의2(손실보상) ①
또는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	
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	
회의 심사・의결에 따라 정당	
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 <u><단서</u>	<u>다만, 소</u>
<u>신설></u>	방공무원의 소방활동에 정당한
	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
	없는 경우는 제외한다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